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6급 9명, 7급 8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 제목 “한시조직”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2의 총계 “876”을 “877”로 하고, 일반직 계 “872”를 “87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59”를 “860”으로 한다.

별표 3의 총계 “20,183”을 “20,184”로 하고, 일반직 계 “20,183”을 각각 “20,1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159”를 “20,160”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2조 관련)

1. 제4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6급 이하	3

2. 제4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6급 이하	2

3.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6일)

총계	17
일반직 계	17
6급 이하	1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8장 한시조직</u> <u><신 설></u>	<u>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u>제42조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u> <u>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u> <u>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u>

관에 둔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6</u>	<u>877</u>	+1
·	·	·	
·	·	·	
일반직 계	<u>872</u>	<u>873</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59</u>	<u>860</u>	+1
·	·	·	

[별표 3]

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183</u>	<u>20,184</u>	+1
일반직 계	<u>20,183</u>	<u>20,184</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0,159</u>	<u>20,160</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4 - 2351